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제정	1998. 10. 14	조례 제 244호
개정	1999. 1. 11	조례 제 257호
개정	1999. 9. 20	조례 제 304호
개정	2000. 7. 28	조례 제 341호
개정	2001. 3. 7	조례 제 364호
개정	2001. 11. 28	조례 제 392호
개정	2002. 4. 4	조례 제 406호
개정	2003. 1. 2	조례 제 434호
개정	2003. 2. 17	조례 제 444호
개정	2004. 1. 10	조례 제 476호
개정	2004. 7. 23	조례 제 501호
개정	2004. 11. 24	조례 제 508호
개정	2005. 3. 5	조례 제 539호
개정	2005. 6. 1	조례 제 554호
개정	2005. 7. 7	조례 제 571호
개정	2005. 9. 21	조례 제 583호
개정	2006. 1. 3	조례 제 594호
개정	2006. 11. 16	조례 제 640호
개정	2007. 7. 2	조례 제 664호
개정	2008. 7. 25	조례 제 720호
개정	2009. 3. 31	조례 제 754호
일부개정	2011. 1. 11	조례 제 879호
일부개정	2012. 3. 14	조례 제 917호
일부개정	2013. 5. 6	조례 제 978호
일부개정	2013. 10. 1	조례 제1001호
일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099호
일부개정	2016. 7. 5	조례 제1234호
일부개정	2017. 11. 10	조례 제1360호
일부개정	2018. 3. 28	조례 제1378호
전부개정	2019. 1. 1	조례 제146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3. 8	조례 제1468호
일부개정	2019. 8. 12	조례 제1518호
일부개정	2020. 5. 8	조례 제1592호
일부개정	2020. 7. 28	조례 제1615호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1649호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166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조례 제1780호
일부개정	2022. 3. 7	조례 제1804호
일부개정	2022. 9. 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9·30 조례 제1859호
일부개정 2023·3·6 조례 제1900호
일부개정 2023·11·1 조례 제2003호
일부개정 2024·5·9 조례 제20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소장의 직급 등)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담당관 및 과·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소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1·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시의회 운영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조사·징계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의 입안심사, 소송사무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 및 공무원 대토론회 추진 및 시민소통 네트워크 추진·관리 사항
2.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시정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23·11·1>

⑥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2. 전산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3·6]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11·1>

[전문개정 2023·3·6]

제5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교육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의전·보안·복무·인사·조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공공정보·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행정구역·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주민자치·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시책업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발급·여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7.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9. 시비의 출납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10. 회계·결산·계약·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 사무
12.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13.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전문개정 2023·3·6]

제6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기획개발 시행
2. 노인 및 장애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3. 장묘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4. 여성 및 가정(가족)복지 및 보육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5.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지원 및 안전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8. 환경정책개발·보전 및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
9.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 제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지도
11.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3·6]

제7조(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는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1·1>

1.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장등록민원에 관한 사항

3. 노사민정 협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
7.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8. 관광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도예산업 육성·지도 및 도자산업특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국내 및 국제교류 사무
11. 산림육성 및 공원화에 관한 사항
12.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4.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3·6]

제8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1·1>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
4. 개발민원 및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5. 지적·도로명주소·공시지가·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주거복지·건축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11·1>
8. 삭제 <2023·11·1>

[전문개정 2023·3·6]

제9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7.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0. 대중교통기획,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3·6]

제9조의2(첨단미래도시추진단) 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는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를 둔다.

②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책·현안사항 중 시장지시 중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략사업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관련된 사항
4. 규제개혁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역세권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11.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9·30>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8·12, 시행일 2020·1·1]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8·12 [시행일 2020·1·1]>

②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0·11·13, 2023·11·1>

③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농어촌의료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일상생활권역은 이천시 관내로 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도시 추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7.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14.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1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1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천시 부악로 38-52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2·29>

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계획 및 평가, 농업기술 홍보·농촌활력화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농업, 교육훈련, 경영개선,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 농업기계수리·대요에 관한 사항
8. 축산정책, 동물방역,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9·30>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③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

제17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 가.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
 - 나. 상수도사용료 조정결정 및 수납
 - 다. 지방채 발행
 - 라. 상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 및 시공감독

마.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공무원 지도감독

바. 그 밖의 사업소 운영관리 사항

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아.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

2.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무

[전문개정 2023·3·6]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9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둔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현장민원실 설치) 읍·면·동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등록, 인감,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민원서류 발급, FAX민원 등 각종 증명을 처리 할 수 있다.

제6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3조(정원의 총수)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2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2, 2020·5·8, 2020·7·28,

2020·11·13, 2020·12·29, 2021·12·28, 2022·3·7, 2023·3·6>

1. 행정기관의 정원 : 1,19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제24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1·1 조례 제146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예산공보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 중 “예산공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조례」 별표 1의 이천시 주관부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교육청소년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별표 3의 비상1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중 “예산공보담당관실”

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고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별표 4의 실무반 편성 중 “예산공보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⑤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중 “안전건설국장 및 예산공보담당관”을 “안전도시건설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중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제12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26조제3항 중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기업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기업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⑫ 「이천시 주택 조례」 제9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 예산공보담당관”을 “종합민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을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으로 한다.

⑭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별표 위임사무명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⑮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중 “산업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⑯ 「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⑰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3호 중 “산업환경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⑲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⑳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㉑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산업환경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㉒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㉓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제1호 중 “산업환경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㉔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중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을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㉕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㉖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제5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 ⑳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2. 비용추계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㉑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㉒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 ㉓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8조제3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㉔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 ㉕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 ㉖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㉗ 「이천시 문화상 조례」 제6조의3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㉘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농정과장, 산림공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산림공원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 ㉙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4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 ㉚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㉛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㉜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3·8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8·12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28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조례」 별표 1의 이천시 주관부서 중 “문화예술과”를 “문예관광과”로 하고, “세무과”를 “세정과”로

하며,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중 “안전건설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별표 3 및 별표 4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문화예술과”를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및 “문예관광과”로 하며, “사회복지과(α)”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체육지원센터, 이천아트홀”을 “체육지원센터”로 한다.

③ 「이천시 문화상 조례」 제6조의3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1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2022·3·7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30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6 조례 제1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체육지원센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보건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을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

전건설국”으로 한다.

②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⑦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⑨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체육지원센터소장”을 “행정지원과장,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⑩ 「이천시 주택 조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합민원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전단 중 “복지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 ⑬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 ⑭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행정국장, 종합허가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 ⑮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중 “기업환경국장, 산림공원과장”을 “경제문화국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 ⑯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26조제3항 중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기업지원과장”을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경제팀장(or 소비자업무 담당팀장)”을 “소비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⑰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중 “기업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 ⑱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업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 ⑲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제1호 중 “기업환경국장, 자원관리과장”을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 ⑳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 ㉑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제12조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 ㉒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 ㉓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 ㉔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㉕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㉖ 「이천시 공인 조례」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㉗ 「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2. 행정지원과장

3. 도로관리과장

4. 도시과장

㉘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이천시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 재난, 정보통신 관련 사고 ·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담당관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자치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질병 ·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원유수급 사고 · 전력사고	1. 기업경제과
보건복지부	· 감염병 재난 · 보건의료 사고	보 건 소
환경부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황사 · 식용수(지방·광역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환경보호과 " " " 상하수도사업소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소관부서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이천시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 도로 및 터널 사고 · 육상화물운송 및 지하철 사고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세 정 과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장(체육시설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산림청	· 산불, 산사태	공원녹지과
행정안전부 소방청	· 화재 · 위험물 사고 ·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 낙뢰 · 가뭄	소관부서 기업경제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이천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의 상시대비단계 제2호 및 사전대비단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및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 수행.

2. 실무반 편성 : 2+α명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실 무 반 (2+α)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및 안전총괄과 소속 근무자(2), 재난 유형별 지원부서의 직원(α)이 실무반 기능 수행 ※ 상황관리 총괄 및 재난취약지역 사전 대비 점검 등

별표 3의 비상1단계 제2호, 비상2단계 제2호 및 비상3단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근무인원	총 4+α 명		
상황관리 총괄반 (4+α 명)	반 장(1)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재난상황관리 (3+α)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3)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3) 도로관리 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상황보고서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명)	복지정책과(α), 자원순환과(α), 환경보호과(α), 기획예산담당관(α), 도로관리과(α), 농업정책과(α), 축산과(α), 공원녹지과(α), 주택과(α), 문화예술과(α), 체육진흥과(α), 상하수도사업소(α), 기업경제과(α), 교통정책과(α), 보건소(α),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α), 이천소방서(α), 이천경찰서(α), 홍보담당관(α), 노인장애인과(α), 건설과(α), 정보통신담당관(α)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근무인원	총 6+α명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	반 장(2)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2)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2)	
	재난상황관리 (4+α)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4)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4) 도로관리 부서(3)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명)	복지정책과(α), 자원순환과(α), 환경보호과(α), 기획예산담당관 (α), 도로관리과(α), 농업정책과(α), 축산과(α), 공원녹지과(α), 주택과(α), 문화예술과(α), 체육진흥과(α), 상하수도사업소(α), 기업경제과(α), 교통정책과(α), 보건소(α), 행정지원과 및 자치 교육과(α), 이천소방서(α), 이천경찰서(α), 홍보담당관(α), 노인 장애인과(α), 건설과(α), 정보통신담당관(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 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역자율방재단
--	-----------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근무인원	총 8+ α + β 명		
상황관리 총괄반 (8+ α 명)	반장(3)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3)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3)	
	재난상황관리 (5+ α)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5)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5) 도로관리 부서(4)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명)	복지정책과(α), 자원순환과(α), 환경보호과(α), 기획예산담당관(α), 도로관리과(α), 농업정책과(α), 축산과(α), 공원녹지과(α), 주택과(α), 문화예술과(α), 체육진흥과(α), 상하수도사업소(α), 기업경제과(α), 교통정책과(α), 보건소(α),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α), 이천소방서(α), 이천경찰서(α), 홍보담당관(α), 노인장애인과(α), 건설과(α), 정보통신담당관(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β 명)	·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역자율방재단		

별표 4 제2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재난안전 소관 국장”으로 하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정책과(α), 자원순환과(α), 환경보호과(α), 기획예산담당관(α), 도로관리과(α), 농업정책과(α), 축산과(α), 공원녹지과(α), 주택과(α), 문화예술과(α), 체육진흥과(α), 상하수도사업소(α), 기업경제과(α), 교통정책과(α), 보건소(α),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α), 이천소방서(α), 이천경찰서(α), 홍보담당관(α), 노인장애인과(α), 건설과(α), 정보통신담당관(α)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주관기관·부서	지원기관·부서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구 분	주관기관·부서	지원기관·부서	담 당 업 무
통제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 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 총괄	안전총괄과 (겨울철 :건설과)	-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여름철)저수지, 하천 등 수위 및 상황파악 · (겨울철)도로제설 추진상황 파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 실태 관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 상황 취합 ·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관리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이천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 이재민수용시설 파악·지정 ·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긴급대책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	·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처리장 설치·운영 · 환경정비분야 읍·면·동 복구현황 파악
긴급 통신지원	정보통신 담당관	KT이천지점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통신분야 읍·면·동 복구현황 파악
시설 응급복구	소관시설 담당부서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한국전력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어촌공사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읍·면·동 시설응급복구현황 파악
에너지 기능복구	기업경제과	한국전력공사코원에 너지서비스	· 가스, 전기, 유류 등 국민생활밀착형 피해·복구 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재난수습 홍보	홍보담당관	-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전광판 등)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언론사 요구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구 분	주관기관·부서	지원기관·부서	담 당 업 무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안전총괄과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및 운영관리
교통대책	교통정책과	이천경찰서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및 교통수단 지원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하천변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의료·방역	보건소	이천소방서	·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자원봉사 관리	자치교육과	자원봉사센터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재난지역 긴급 대응인력 투입
사회질서 유지	이천경찰서	교통정책과	·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수색, 구조·구급	이천소방서	보건소	·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기타부서 및 기관, 단체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추진 및 지원

별표 6의 비고(주관부서)란 중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고,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하며,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하고, “자원관리과”를 “자원순환과”로 하며,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 자치교육과”로 한다.

㉔ 「이천시 포상 조례」 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㉕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8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자치교육과장”으로 한다.

㉖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청년아동과장”으로 한다.

㉗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별표 중 “민원봉사와”를 “민원여권과”로, “징수과”를 “세원관리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자원관리과”를 “자원순

환과”로, “건설과”를 “도로관리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종합허가과”를 “허가과”로, “체육진흥센터”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③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행정서비스현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한다.

⑥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 중 “산림공원과장, 건설과장”을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⑦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정책과장, 산림공원과장, 문예관광과장”을 “관광과장, 공원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제2항 중 “산림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

⑨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중 “체육지원센터소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⑩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제3호 중 “재난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2023. 11. 1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은 항 제3호 중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으로 한다.

부칙 〈2024·5·9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5. 9〉

보건소 · 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4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이천시 보건소	이천시 부악로 36(중리동)	이천시 일원
이천시보건소남부통합지소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180번길 25	장호원읍·설성면·율면 일원
이천시보건소 부발읍지소	이천시 부발읍 무춘로 117	이천시 부발읍 일원
이천시보건소 백사면지소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1030	이천시 백사면 일원
이천시보건소 호법면지소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7	이천시 호법면 일원
이천시보건소 대월면지소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10	이천시 대월면 일원
이천시보건소 모가면지소	이천시 모가면 대월로63번길 54	이천시 모가면 일원
이천시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05-23	이천시 마장면 일원

[별표 2] 〈개정 2019. 8. 12〉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10조제4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장북보건진료소	장호원읍 나래천로509번길 129-4	이황3, 나래1·2·3리
가산보건진료소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96	가산1·2·3리, 응암리, 송온리, 수정리
고백보건진료소	부발읍 중부대로1997번길 112	고백1·2리, 대관리, 신원2리
도암보건진료소	신둔면 원적로 425	도암1·2·3리, 도봉1·2리, 장동1·2·3리, 지석리, 수하리
마교보건진료소	신둔면 황무로347번길 7	마교리, 인후1·2리, 용면리, 소정리
우곡보건진료소	백사면 청백리로 380	우곡리, 내촌리, 도지1·2리, 조읍1리, 상용리, 백우리
매곡보건진료소	호법면 이섭대천로100번길 40	매곡1·2리, 단천1리, 동산1·2리
유산보건진료소	호법면 이섭대천로793번길 23	유산1·2·3·4리
표교보건진료소	마장면 중부대로638번길 15	표교1·2·3리, 목리, 이치1·2리, 장암1·2리
단월보건진료소	이천시 단월로 38번길 3	호법면 안평2리, 단월동1·2통, 대포동1·2·3통, 장록동1통, 고담동1·2통
군량보건진료소	대월면 대월로436번길 122	군량1·2·3리, 구시리, 송라리
어농보건진료소	모가면 사실로 716	어농1·2·3리, 두미1·2리
장천보건진료소	설성면 설성로173-5번길	장천1·2·3·4리, 암산1·2리
상봉보건진료소	설성면 설가로301번길 43-17	상봉1·2·3·4리, 송계1·2·3리
월포보건진료소	율면 임오산로 362번길 70	월포2·3·4리, 충곡리

[별표 3] 〈개정 2023. 3. 6〉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소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1390번길 293
차량등록사업소	이천시 부악로 30-45(중리동)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 · 면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개정 2024 · 5 · 9〉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규정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6.5)% 이내	(33)% 이내	(25)% 이내	(8)% 이상	(0.5)% 이내

※ 비고 : 읍 · 면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3)% 이내	(87)% 이상

※ 비고 : 읍 · 면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 이내	(30)% 이내	(30)% 이내	(30)% 이상	

※ 비고 : 읍 · 면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개정 2023. 11.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회사무 기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223	1,223						
정무직	소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1,174	1,174						
	3급	1		1					
	4급	9		6	2	1			
	5급	60	3	35	5	3	2	8	4
	6급 이하	1,104	1,104						
별정직	소계	3	3						
	6급 상당 이하	3		3					
연구직	소계	5	5						
	연구사	5		2	3				
지도직	소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7] 삭제 <2023·3·6>

[별표 8] 〈신설 2023. 11. 1〉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부칙 제2조 관련)

기관별	부 서	구 분		정 원	존속기한
		직급	직군		
본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4급	행정+기술	1명	2026년 10월 31일까지